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12호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0년도 제1회 및 제2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7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요건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총 계			28개 직렬		1,329명	
제1회 임용시험	소 계		19개 직렬		1,279명	
	공개경쟁	행정직군	행정직(일반행정)	9급	434명	·제한 없음
			행정직(일반행정)_장애인		36명	
			행정직(일반행정)_저소득층		24명	
			세무직(지방세)	9급	74명	·제한 없음
			세무직(지방세)_장애인		6명	
			세무직(지방세)_저소득층		2명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140명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회복지직(사회복지)_장애인		8명	
			사회복지직(사회복지)_저소득층		2명	
			전산직(전산)	9급	22명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전산직(전산)_장애인		1명	
			사서직(사서)	9급	36명	·1·2급 정사서, 준사서
			사서직(사서)_장애인		2명	
			사서직(사서)_저소득층		1명	
		기술직군	간호직(간호)	8급	48명	·조산사, 간호사
			공업직(일반기계)	9급	80명	·제한 없음
			공업직(일반기계)_장애인		4명	
			공업직(일반기계)_저소득층		2명	
			공업직(일반전기)	9급	34명	·제한 없음
			공업직(일반전기)_장애인		2명	
			공업직(일반전기)_저소득층		1명	
			공업직(일반화공)	9급	21명	·제한 없음
			공업직(일반화공)_장애인		1명	
			농업직(일반농업)	9급	8명	·제한 없음
			농업직(일반농업)_장애인		1명	
			보건직(보건)	9급	22명	·제한 없음
			보건직(보건)_장애인		1명	
			식품위생직(식품위생)	9급	3명	·제한 없음
			환경직(일반환경)	9급	26명	·제한 없음
			환경직(일반환경)_장애인		1명	
			녹지직(산림자원)	9급	8명	·제한 없음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인원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제2회 임용시험			녹지직(조경)	9급	10명	·제한 없음
			녹지직(조경)_장애인		1명	
			시설직(일반토목)	9급	82명	·제한 없음
			시설직(일반토목)_장애인		4명	
			시설직(일반토목)_저소득층		2명	
			시설직(건축)	9급	52명	·제한 없음
			시설직(건축)_장애인		3명	
			시설직(건축)_저소득층		2명	
			시설직(지적)	9급	28명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시설직(지적)_장애인		1명	
			방재안전직(방재안전)	9급	6명	·제한 없음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21명	·제한 없음
			방송통신직(통신기술)_장애인		1명	
	경력경쟁	기술직군	해양수산직(일반선박)	9급	2명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6급), 기관사(1~6급)
			해양수산직(선박항해)	9급	3명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6급)
			의료기술직(의료기술)_방사선	9급	2명	·방사선사
			의무직	5급	5명	※ 별도 시험계획 공고 및 시행
		지도직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1명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생물공학,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농촌지도직(농촌생활)		2명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서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소 계		13개 직렬		50명	
	공개경쟁	행정직군	행정직(일반행정)	7급	15명	·제한 없음
		기술직군	약무직(약무)	7급	2명	·약사, 한의사, 한약사
			운전직(운전)	9급	12명	·제1종 대형 운전면허
	경력경쟁	기술직군	수의직(수의)	7급	3명	·수의사
		기술계고졸	보건직(보건)	9급	1명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직렬(직류)별 관련 학과를 졸업(예정 포함)하고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20.1.1. 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응시 희망자는 2020. 7. 31.(금)까지 해당 학교로 신청
			공업직(일반기계)	9급	1명	
			공업직(일반전기)	9급	1명	
			시설직(일반토목)	9급	1명	
			시설직(건축)	9급	1명	
		연구직	학예연구직(학예일반)_고고학	연구사	2명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을 전공하고, 해당 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기록연구직(기록관리)	연구사	1명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물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해당 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 한 사람 2) 기록관리학 학사,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2011.5.23. 이전에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2명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해당 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6명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가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해당 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녹지연구직(임업)	연구사	1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하고, 해당 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해양수산연구직(수산양식)	연구사	1명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해당 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근무지역 : 부산광역시 또는 16개 자치구·군(읍·면·동 포함)

나. 공통 응시자격

1) 응시연령

구분(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8·9급	18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7급, 연구·지도사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2) 거주지 제한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 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결격 사유 (적용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19. 4. 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2019. 4. 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19. 4. 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다. 직렬(직류)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1) 응시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한 자격요건이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합니다.

※ 허위로 자격(면허)증 또는 학위를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하며, 필기시험 합격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면허)증은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면허)증·학위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3) **연구직·지도직 응시자는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를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가능**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관련(계통) 학 전공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관련(계통) 학위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붙임4] 연구직·지도직 관련(계통) 학 증명서 및 추천서(양식) 참조

4) **연구직**에서 "전공하고/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

5) **지도직**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며(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함), 아래 자격증도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농촌지도직(농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농촌지도직(농촌생활) :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어야 하며,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비보호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에 구·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주민생활 또는 사회복지 담당부서)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바. 기술계 고졸(예정자 포함)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선발 직렬(직류)의 관련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20. 1. 1. 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추천대상자 선발 직렬(직류)별 관련학과

직렬(직류)	관련학과
보건직(보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공업직(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업직(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시설직(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시설직(건축)	건축(건축설비)

※ 선발 직렬(직류)와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의한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관련되는 학과일 경우에는 추천 학교장 명의의 확인이 필요함

○ 추천대상자 학과 성적 기준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교에서 → 실업계 고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2)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2. 12. 31.이전 출생자)이거나, 고등학교 3학년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3. 12. 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3) 학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거나 또는 응시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응시대상자는 2020. 7. 31.(금)까지 해당 학교로 신청해야 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으로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시험과목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행정직군	행정직(일반행정)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세무직(지방세)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전산직(전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서직(사서)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기술직군	간호직(간호)	8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공업직(일반기계)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전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직(일반화공)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일반농업)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보건직(보건)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직(식품위생)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환경직(일반환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녹지직(산림자원)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지직(조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시설직(일반토목)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건축)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직(지적)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직(방재안전)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경력경쟁	기술직군	해양수산직(일반선박)	9급	필수(3) : 물리, 기관일반, 선박일반
			해양수산직(선박항해)	9급	필수(3) : 물리, 선박일반, 항해
			의료기술직(의료기술)_방사선	9급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지도직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 토양학, 작물육종학 중 1과목
			농촌지도직(농촌생활)		필수(2) :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선택(1) : 식품영양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행정직군	행정직(일반행정)	7급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기술직군	약무직(약무)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운전직(운전)	9급	필수(3)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경력경쟁	기술직군	수의직(수의)	7급	필수(3)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기술계 고졸	보건직(보건)	9급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공업직(일반기계)	9급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공업직(일반전기)	9급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직(일반토목)	9급	필수(3) : 물리, 토목일반, 측량
			시설직(건축)	9급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연구직	학예연구직(학예일반)_고고학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박물관학, 한국고고학 중 1과목
			기록연구직(기록관리)	연구사	필수(5) :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 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선택(1) : 문헌정보학, 역사학 중 1과목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연구사	필수(2) : 보건학, 역학 선택(1) : 환경보건학, 식품화학 중 1과목
			환경연구직(환경)	연구사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중 1과목
			녹지연구직(임업)	연구사	필수(2) : 생물학개론, 조림학 선택(1) : 수목학, 임목육종학 중 1과목
			해양수산연구직(수산양식)	연구사	필수(2) :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선택(1) : 어병학, 수산생물학 중 1과목

☞ 출제범위 등

- ㅇ 9급 공개경쟁의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은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됨
- ㅇ 9급 기술계 고졸 경력경쟁의 시험과목은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함.
 - **건축계획·건축구조**는 건축일반 교과의 해당 부분에서 출제되고, **측량**은 2015년 교육과정상 실무과목이지만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이론으로 출제됨.
 - 기계설계는 **기계제도**로, 응용역학개론은 **토목일반**으로 시험과목이 변경됨
- ㅇ 7급 공개경쟁의 **행정학**은 지방행정이 포함됨

☞ 수의직(수의) 7급은 공개경쟁에서 경력경쟁으로 변경(시험과목 7개 → 3개 과목으로 변경)

☞ 9급 공개경쟁의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사서직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 점수를 적용함

☞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은 해당 직렬(직류)와 동일한 시험과목임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입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1)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필기시험 합격에 따른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응시자격 요건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결정 등

1) 합격자는「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2)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 **경력경쟁**은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하거나 또는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3) 최종합격자는「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력경쟁)	4. 6.(월) 09:00 ~ 4.10.(금) 18:00 [취소기간 : 4. 6.(월) ~ 4.13.(월)]	**필기**시험	5.22.(금)	**6. 13.(토)**	7.17.(금)
		면접시험	7.17.(금)	8.17.(월)~8.28.(금)	9.11.(금)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력경쟁)	8.10.(월) 09:00 ~ 8.14.(금) 18:00 [취소기간 : 8.10.(월) ~ 8.17.(월)]	**필기**시험	9.25.(금)	**10. 17.(토)**	11.11.(수)
		면접시험	11.11.(수)	11.24.(화)~11.26.(목)	12.11.(금)

☞ 시험일정은 시험 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채용정보(http://gosi.busan.go.kr)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문자 통보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본인 성적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응시수수료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

※ 자세한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고객센터(☎ 1522-0660)로 문의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3) 응시수수료 : 8·9급 5,000원, 7급·연구·지도사 7,000원

※ 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추가 소요됨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기재 착오, 누락, 응시자격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최종 접수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 함

2)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결제완료 이후 응시 직렬(직류)을 변경할 때에는 결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함

3)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4) 원서접수 시 등록하는 사진은 시험 시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사진파일은 규격 3.5cm × 4.5cm, 해상도 100dpi 이상이어야 함

※ 모자·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본인사진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람

5) 장애인·임신부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제공 내용, 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은 [붙임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서 확인

6) 응시표는 필기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분실 시 재출력 가능)

7) 부산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

※ 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가 추가 합격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나~마'에서 확인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소지자	공통 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 ~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연구·지도직은 제외)**

2)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등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다. 의사상자 등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는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라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3)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 항목의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을 가산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대상 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분야	7급, 연구사·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7·8·9급, 연구·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위 표의 자격증 중에서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舊 워드프로세스 2·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

2) **직군(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군** : 아래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직(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직(사회복지)	변호사	

나) **기술직군**(연구직 포함)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단,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가산 제외)

구 분	7급, 연구사		8 ·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붙임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서 확인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가산점 적용에 관한 자격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가산점 등록기간 : 응시원서 접수 시부터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 가산점 등록사항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 가산비율 등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취업지원 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은 각각 가산되며, 동일한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 가산점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됩니다.

3) 취업지원 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는 필기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공고합니다.

나. 시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채용정보(http://gosi.busan.go.kr)를 통해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하는 과목에 대하여만 공개하며, 부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하는 과목은 비공개합니다. ※ [붙임2]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 안내 참조

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바. 기술계 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가 대학 재학이나 대학 졸업 학력(학점은행제 등 포함)이 드러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단, 2020년 1월 1일 이전 대학 중퇴자의 경우 응시 가능)

사.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시·도 및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합니다.

아.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은 같은 일반모집 직렬(직류)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달라지는 시험제도 사전안내)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

▣ 7급 공개경쟁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됨

▣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시·도 포함)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함** (기관별 중복접수 불가)

▣ 9급 기술계 고졸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자격이 변경됨**

○ (현행) 졸업자 및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 → **(변경)** 졸업자 및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단,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만** 응시 가능)

▣ 6급 이하(연구·지도사 포함) 임용시험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됨**

▣ 연구·지도직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지도직 경력경쟁시험의 선택과목이 직무 중심의 전문과목 1개 과목으로 조정됨

○ (현행) 선택과목 2개 과목 중 1개 과목 선택 → **(변경) 선택과목 1개 과목으로 필수 지정**

〈 2022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

▣ 9급 공개경쟁시험에서 **선택과목(사회, 과학, 수학)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 (선택과목 조정점수제는 폐지)

※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채용정보(http://gosi.busa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담당관 인재채용팀(☎ 051-888-19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2.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 안내
3. 장애인(임신부 포함)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4. (연구직·지도직) 관련(계통) 학 증명서 및 추천서(양식)